

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배치기관 안내문

○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국가가 미취업 장애인에게 소득보장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반형일자리, 복지일자리, 특화형일자리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.

구분	일반형일자리		복지일자리		특화형일자리	
	전일제	시간제	참여형	특수교육-복지연계형	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	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
근무 시간	1~11월	주 40시간	주 20시간	주 14시간 이내(월 56시간)		주 25시간
	12월	주 37.5시간	주 19시간			주 23.5시간
선발대상	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		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	특수교육기관 전공과 재학생	만 18세 이상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시각장애인	만 18세 이상 지적장애 및 자폐성 등록 장애인
업무내용	행정도우미, 전담지원 행정도우미,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		급식도우미, 도서관 사서 도우미 등 참여자의 흥미와 직업능력을 반영한 맞춤형 직무수행		어르신 대상 전문 안마 서비스 제공	요양보호사 보조
사업기간	1월 ~ 12월 (12개월)					

○ 참여자 근태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.

· 근무 상황 관리

- 배치기관 담당자는 참여자의 근태관리(휴가, 결근 등)를 위해 참여자에게 근무상황일지[서식17]를 작성하도록 하고 참여자의 근태관리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여 매월 사업수행기관에 참여자의 근무상황일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※ 휴가, 결근, 병가 등으로 근무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일은 근무로 표기하지 않습니다.
- 사업수행기관은 휴가 및 병가 등을 사용하는 참여자에게 근태 신청서[서식18]를 받아 관리하도록 합니다.
※ 근태 신청서 작성 시 근태 종류를 필히 체크

○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는 휴가, 병가, 특별휴가 및 공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단, 복지일자리는 월 56시간 초단시간 근로로 별도의 휴가, 병가, 특별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

1) 휴가 및 병가(복지일자리 제외)

구분	휴가	병가	
일반형일자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.1. ~ 12.31. 참여자 연 15일(1년간 출근율 80% 이상일 경우) • 중도참여자 :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가발생 예) 1/15~2/14 : 1일의 연가 발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일제 : 연 10일(80시간) • 시간제 : 연 10일(40시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병가 사용 시 증빙서류: 의사진단서 또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필수 ※ 중도참여자의 경우도 병가 사용 가능
특화형일자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. 1. ~ 12. 31. 참여자 연 15일(1년간 출근율 80% 이상일 경우) • 중도참여자 :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가발생 예) 1/15~2/14 : 1일의 연가 발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 10일(50시간) 	
복지일자리	해당사항없음		

2) 특별휴가(복지일자리 제외)

	구분	휴가일수	증명서류
결혼	본인	5일	청첩장
	자녀	1일	
사망	배우자	5일	부고장 또는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일	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/외조부	2일	
	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	2일	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, 자매	1일	
입양	본인	20일	입양확인서
출산	배우자 출산	5일	출생증명서

3) 공가

-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·법원·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
 -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(사전투표일 경우 제외)
 - 천재·지변·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
 -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 대상자로 통보 받아 수검을 받을 경우
 - 장애인일자리사업 교육, 시상식 등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
 - 민간일자리 전이를 위해 취업알선 및 취업전이 교육에 참가하는 경우
 - 본인의 고등학교,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
 - 배치기관의 창립기념일, 개관기념일, 개교기념일로 휴업을 하는 경우
 - 국내대회(전국장애인체육대회,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,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) 및 국제대회(아시아경기대회, 올림픽대회, 스페셜올림픽대회, 농아인올림픽대회, 유니버시아드대회, 청소년올림픽대회, 아시아장애청소년경기대회)에 선수로 참가하는 경우
(단, 대회주최기관의 공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기일정만 인정되며 국제대회만 이동시간을 포함)
- ※ 그 외 사항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문의

○ 참여자가 직업상담, 취업알선, 직업훈련 등을 실시한 후 관련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일정 범위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.

- 일반형일자리(전일제/시간제)
 - 전일제 연 60시간 이내(월 최대 20시간 이내)
 - 시간제 연 30시간 이내(월 최대 10시간 이내)
 - 복지일자리(참여형/연계형)
 - 연 21시간 이내(월 최대 10시간 이내)
 - 특화형일자리(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,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)
 - 연 38시간 이내(월 최대 12시간 이내)
- 인정되는 교육과정으로는 Q-Net(<http://www.q-net.or.kr>) 자격정보에서 확인 가능한 국가자격증 과정 및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과정이 해당됩니다.
 - 배치기관 담당자는 참여자가 제출한 직업재활서비스(직업훈련)확인서를 확인합니다.

○ 장애인일자리사업 용어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.

- 수행기관: 지역의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며 참여자가 근로계약을 맺는 기관(ex: oo시청, oo복지관, oo단체 등)
- 배치기관: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실제 근무하는 기관
- 담당자: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
- 참여자: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장애인 당사자

※ 본 안내문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배치되어있는 기관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작되었습니다. 안내문에 포함되지 않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